

중 국

중국 법원, 중국 외 지역에서 제작·발행된 외국 음반의 보상청구권 불인정

2026. 09. 02.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최근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广州知识产权法院)은 외국 법인이 해외에서 제작·발행한 음반에 대해 관련 국제조약 및 법률 규정 적용에 따라 음반 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호텔에서 해당 음반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중국음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 이하 음집협)가 제기한 보상금 청구를 기각함.

○ 음집협, 호텔의 배경음악 사용에 대한 보상금 청구

음집협은 광저우의 한 호텔에서 음반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보상금 약 2만 4천 위안과 권리구제 비용 2천 위안 등을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인 광저우시 난사구 인민법원(广州市南沙区人民法院)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음집협이 해당 일부 곡의 음반제작자로부터 허가받았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호텔에서 사용된 곡과 음집협이 권리를 주장하는 음반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음집협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실연·음반조약(WPPT) 유보에 따른 보상청구권 적용 범위 판단

음집협은 이에 항소하였고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은 중국이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조약(WPPT)> 가입 당시 제15조 제1항의 적용을 유보한 한편 저작권법 개정 시 음반 보상청구권이 해외에서 제작·배포된 음반에 적용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황 하에 외국 법인이 해외에서 제작·발행한 음반의 보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또한 호텔 객실에 라디오 기능이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만 제공하였으며, 해당 청취프로그램은 방송국에서 제공한 것으로 호텔에서 자발적으로 전파나 방송한 것이 아니므로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음반을 공개 전파하거나 방송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음집협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함.

■ 참고자료

판례
- (2026)粤73民终338号